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 기관 및 한도의
시행령 위임〉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32)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 기관 및 한도를 시행령으로 위임	2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제도 도입	13
[참고자료]	2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2. 27.
3. 회 부 일 : 2025. 2.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처로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합은 차입처에서 제외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출자조합의 보증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출자조합이 담보하고 있지만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금 조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여 자금 조달처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 차입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고 함(안 제112조의8제1항제3호 및 제2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외부 회계감사 등 외부통제기능이 없어 부실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므로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

Ⅲ. 검토의견

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 기관 및 한도의 시행령 위임

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차입 기관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차입 한도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근거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이만희의원안
제112조의8(사업)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112조의8(사업) ①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회원을 위한 자금 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u>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u>	3. ----- ----- <u>자금 차입</u>
4.·5. (생략) <u><신설></u>	4.·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 및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현행법 하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자조합에서 직접 차입이 불가하여 사업확대 및 운영자금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차입선 확대를 통한 자금 유동성 확보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규모에 맞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자금 차입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차입처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음.

2) 농협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입처 확대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다만, 개정안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까지의 일정(6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1)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금 차입 현황 등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라 함)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이하 ‘조합’이라 함)이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법인임¹⁾.

조공법인은 2024년 말 기준 원예사업 63개소, 양곡사업 51개소, 통합사업(양곡+원예) 5개소, 가공사업 5개소, 축산사업 8개소 등 총 132개소가 있음²⁾.

[조합공동사업법인 현황('24년말)]

사업 유형	법인수	참여 조합 등	경영현황(억원)			
			사업실적	평균실적	총손익	평균손익
원예	63	469	38,652	644	87	1.5
양곡	51	287	16,167	330	△19	△0.4
통합	5	28	3,218	644	6	1.2
축산	8	56	3,714	464	51	6.4
가공	5	27	2,080	416	26	5.2
합계	132	867	63,831	503	151	1.2

* '24년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 5개소 실적제외<(원예) 진천군, 영동군, 포항시 / (양곡) 원주시, 아산시>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5.3.24)

현행법에 따르면 조공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법인 등³⁾인데, 실제 중앙회나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회원인 조공법인은 없고 일부 농업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회원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2(목적) 조합공동사업법인은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거나 축산물의 판매·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둘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세부 현황은 참조자료 참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4(회원의 자격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은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하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조공법인의 자기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행법 제112조의8제3호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함.

[조합공동사업법인 자본계정]

(단위: 억원)

구 분	내 용	총액('24년말)
출자금	■ 납입출자금 : 농축협이 중앙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자하는 금액 ■ 회전출자금 : 농축협 이용고배당액 중 일부(20%)를 출자하는 금액으로 5년 후 납입출자금으로 전환 ■ 우선출자금 : 불특정 다수인이 우선배당을 목적으로 출자하는 금액	8,238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①감자에 의한 차익 ②자산재평가 차익 ③합병차익)	112
자본조정	■ 자본거래 중 자본의 가감성격으로 자본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1
이익잉여금	■ 기업의 영업활동 및 기타 손익거래의 결과로 내부에 축적된 잉여금	1,70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손익거래 중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손익의 잔액 (매도가능증권·파생상품 평가손익 등)	280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3.24)

조공법인의 최근 5년 실제 차입 총액을 살펴보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자금(99.9%)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음.

[최근 5년 조합공동사업법인 차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경제지주	농협은행	계
2020	-	18(0.1)	-	-	13,139(99.9)	13,157
2021	-	18(0.1)	-	-	15,837(99.9)	15,855
2022	-	22(0.1)	-	-	17,695(99.9)	17,717
2023	-	22(0.1)	-	-	19,138(99.9)	19,160
2024	-	21(0.1)	-	-	19,806(99.9)	19,827

* 공공단체: aT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한 자금지원(산지유통활성화자금)

** 농협은행: (자금)대출실행은행 역할수행(자금대출 채널)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3.24)

(2) 조공법인 차입처 및 차입 한도 시행령 위임에 대한 검토

현행법은 조공법인의 자금 차입 기관을 국가·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농협은행으로 열거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자금 차입 기관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자금 차입 한도에 대해 별도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법률에서 조공법인의 자금 차입처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공법인은 출자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해 사업 확대 및 운영자금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이에 자금 차입처를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그 차입처를 조합으로까지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해 그 차입 한도를 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먼저, 현행법에서 자금 차입 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이 원천 금지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농협등 조합의 자금 차입처를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57조제2항4)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해당 규

4)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로부터의 차입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시⁵⁾한 바 있음.

이에 조공법인 역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 기관 외의 기관에서의 차입은 금지된다 할 것임.

다음으로, 조공법인의 출자조합 또는 출자 외 조합⁶⁾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출자조합은 조공법인에 대하여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채무부담을 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공법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조달을 위해 대부분의 자금(99.9%)을 농협은행에서 차입하고 있는데, 농협은행은 일반법인의 ‘무보증여신 취급기준⁷⁾’에 따라 출자조합이 조공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5) ▪ 판례 (대법원 2016다203511): 농업협동조합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차입에 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판례 (대법원 70다2667): 조합이 중앙회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는 농협법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당연 무효의 행위임

6) 농식품부는 차입처에 조합을 포함할 경우 대부분의 차입은 출자조합으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출자조합이 아닌 조합으로부터의 차입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임.

7) 「무보증취급여신 기준」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는 실시하되,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제1편제1장제1절제3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보증여신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경영실태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순자본비율이 5% 이상인 회원조합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차입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취급

가. 조합공동사업법인 자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운전, 시설자금): 전 출자조합이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보증, 다만, 일부 조합이 보증결격조합인 경우 동조합의 보증부분을 타 출자조합이 출자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보증(안분금액의 120%)

나.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조합의 출자선도금으로 운용되는 자금: 실제자금 수혜조합이 선도금 수혜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보증(안분금액의 120%)

[조공법인의 자금차입 절차]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3.24)

한편, 지역농협 등 조합의 자금 차입처를 규정한 현행법 제57조제2항8)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차입’의 개념에는 조합의 직접적인 차입 이외에 제3자를 위한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시⁹⁾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조공법인이 농협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 출자조합이 조공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 역시 차입에 해당하므로, 출자조합이 사실상 조공법인의 차입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합으로부터 차입을 금지하는 현행 조항과 조공법인에 대한 조합의 유통지원자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간 정합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현행법 제59조¹⁰⁾에 따르면 조합은 조공법인에 농산물 등의 유통을

8)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9) 판례 (대법원 70다1450): 조합의 차입선을 국가, 공공기관 또는 중앙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차입”의 개념에는 조합의 직접적인 차입 이외에 제3자를 위한 보증도 포함

10) 「농업협동조합법」 제59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나 제112조의2

지원하기 위해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유통지원자금 지원이 통상 ‘융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으로부터의 차입 금지 조항으로 인해 조공법인에 대한 유통지원자금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중앙회는 현행법 제136조¹¹⁾에 따라 조합 또는 조공법인에 대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무이자 융자(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이차보전(금융자금)의 형태로 총 918개소에 대해 6조 2,5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음¹²⁾.

[중앙회의 유통지원자금 지원 현황]

구 분	2024년 기준(억원)		
	합계	농경	축경
조합상호지원자금	30,603	18,415	12,188
금융자금	31,925	25,813	6,112
합계	62,528	44,228	18,300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3.24)

셋째, 현행법 조항에서 조합을 조공법인의 차입처에서 제외했던 당초 취지와 현재 변경된 상황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당초 현행법 조항에서 출자조합을 조공법인의 차입처에서 제외한

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11)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의 조합원,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통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12) 중앙회에 따르면 유통지원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을 조공법인으로 한정해서는 파악이 어려움.

것은 출자조합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이 이루어질 경우 조공법인과 출자조합들의 동반 부실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는 「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분기 말 경영상태 평가를 통해 조합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부실우려 조합 심의대상 기준도 계속 상향¹³⁾됨에 따라 연도별 구조개선(재무구조개선, 합병, 계약이전) 대상 조합수가 감소하는 등 조합 부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음.

[구조개선 대상 조합수 추이]

구 분	'11	'16	'21	'22	'23	'24
조합수	14	7	1	0	3	1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3.24)

또한, 현재 조합의 자기자본 대비 조공법인 출자금액은 2% 수준¹⁴⁾에 불과하고, 개정안에서 차입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도 규정 시 출자조합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한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¹⁵⁾

참고로, 조합의 경우 시행령에 자금 차입 한도가 규정¹⁶⁾되어 있는데

13) 부실우려조합으로 선정 시 경영개선(권고·요구, 명령)을 통해 자체경영개선, 합병, 계약이전 조치를 통해 부실우려 조합을 지원함

※ 부실우려조합 기준 상향 : '03) 순자본비율 100분의 0미만 → '04) 100분의 2미만 → '05) 100분의 3미만 → '06) 100분의 4미만 → '10) 100분의 5미만

14) 2024년 말 기준 조합 자기자본은 38조 8,434억원, 조합의 조공법인 출자금액은 8,316억원으로 조합의 자기자본 대비 조공법인 출자금액은 2% 수준임

15)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행령상 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액 한도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자기자본 이내로 규정하고 차입상황을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관리할 예정임.

1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조합의 신용사업의 방법 및 자금차입한도) ②조합이 법 제57조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 합계액의 한도는 법 제67조제2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제1호·제2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에

원칙적으로 자기자본과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예치 여유자금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이 가능함.

이와 같이 출자조합이 사실상 조공법인의 차입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 조공법인에 대한 유통지원자금 지원 조항과의 정합성, 적정 차입 한도 규정을 통해 조합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 방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조공법인의 차입 기관에 조합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마지막으로, 입법 방식의 문제로 조합을 조공법인의 차입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할 것인지, 차입 기관 전체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조합을 포함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은 조공법인의 차입 기관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현행 조항과 달리 차입 기관의 범위를 시행령 위임을 통해 규정하고자 함.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헌법-법률-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등으로 이어지는 법령 간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의 중요한 사항¹⁷⁾은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예치하는 각각의 여유자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조합이 농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 인출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17) 법령입안심사기준(2024년) 제1편, 제2장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 형식의 선택 p. 8, 법제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는 주로 법치행정의 원칙 중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률로 정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중 유력한 견해인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르면 행정의 중요한 사항(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행정의 중요한 사항이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라고 보아왔으나, 급부행정과 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속하지 않는 분야의 행정이라 하더라도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공법인의 차입처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만큼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가능해 보임.

이 경우 정부가 조공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입처 관련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 및 조공법인이 공통적으로 자금 차입기관을 법률에 열거¹⁸⁾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조공법인의 차입기관만 시행령으로 위임되는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법 체계와 같이 자금 차입기관을 열거하되 조합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8)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제도 도입

개정안은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공법인이 4년마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이만회의원안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생략)	제112조의10(회계처리기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직전 회계연도 말의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4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③ 감사인은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하였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의 결산승인을 위한 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이사회, 감사 및 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회계감사 적용례)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3항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과 같이 조공법인의 자산규모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제도 도입을 통해 조공법인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농협중앙회

일정규모 이상에 대한 조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도입은 재고 관리의 정확성 제고와 재무제표의 대내외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동의함.

다만,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까지의 일정(6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3) 공인회계사협회

조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 도입 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나. 검토의견

(1) 현행법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 및 조공법인에 대한 감사 현황

외부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¹⁹⁾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

19)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 처리와 외부감사인인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외부 회계전문가에 의해 검증받는 제도임.

조합의 경우 현행법 제65조의2²⁰⁾ 등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500억원) 이상이면 4년마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2024년 12월 기준 총 1,111개 조합의 자산규모 총액이 모두 500억원 이상으로, 전체 조합이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됨.

한편, 조공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현행법에 따르면 자체감사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등 내부 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음.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현황]

구 분	외 부	내 부		
	농식품부	조합감사위*	주관조합**	자체감사
근거 규정	농협법 §162① 농협법시행령 §46① 농식품부 감사규정 §3① ²¹⁾	농협법 §162③, 농협법시행령 §51② ²²⁾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도·지원규정 §11조 ²³⁾	농협법 §112조의7 ²⁴⁾
대상 조합	전체 조합공동사업법인	전체 조합공동사업법인	출자 조합공동사업법인	해당 조합공동사업법인
주기	-	2년	-	-
감사 범위	감독을 받는 범위 내의 업무전반	사업계획·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일상적인 업무	업무 또는 회계와 재산에 관한 사항	재산과 업무집행상황

* 농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

** 주관조합 : 출자조합을 대표하는 조합

20)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1) 제162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과 중앙회를 감독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1조의11제7항 및 제162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등과 중앙회·농협은행에

(2) 조공법인 회계감사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조공법인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검증을 받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공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의 도입은 조공법인의 사업 규모가 증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외부 통제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

조공법인은 2004년 조합 경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그 수가 매년 증가하여 현재 132개가 설립되어 있고, 조공법인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규정」 제3조(감사의 주기) ① 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농업협동조합은 2년)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감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조합등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1조(감독권 등의 위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2. 법 제162조제1항 및 이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4.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구

23) 「조합공동사업법인 지도·지원규정」 제11조(관리약정 체결) ① 출자조합은 주관조합을 선정하여 법인의 설립등기 완료 또는 출자와 동시에 관리약정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관리약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관조합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

2. 주관조합의 감사 수행에 관한 사항

3.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인의 경영방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4)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7(임원) 조합공동사업법인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6조(임원의 직무) ③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할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 감사규정」 제4조(감사범위 및 감사대상 기간) ① 정기감사는 전변감사 기준일 다음 날부터 금번 감사 기준일 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출자한 조합수도 867개로 전체 조합(1,111개소)의 78%가 참여하고 있음.

그 결과 조공법인의 사업량(매출액 기준)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총 사업량이 6조 3,831억원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 조합공동사업법인 개수 및 총사업량 추이]

(단위: 개, 억원)

구 분	'10	'15	'20	'21	'22	'23	'24
법인수	56	97	104	109	116	121	132
출자조합	397	627	666	728	767	803	867
총사업량	22,783	28,823	39,440	43,952	47,153	53,652	63,831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3.24)

조공법인은 결성조합의 증가 및 총사업량의 꾸준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외부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외부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또한, 조공법인의 사업 규모 증대 및 자산 등의 증가에 따라 조공법인 회계의 부정이나 부실 발생 시 이로 인한 피해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출자조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회계의 부정이나 부실 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조공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개정안을 수용하여 현재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기준인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을 적용할 경우 2024년 말 기준 132개의 조공법인 중 14%인 19개소가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산규모 500억 이상 조공법인 현황('24년말)]

구 분	원예	양곡	가공	통합	합계
법인수	2	14	1	2	19

※ 자료: 농협중앙회 제출자료('25.3.24)

한편, 우리위원회에 지역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임미애의원안)²⁵⁾ 회부되어 있음.

다만, 조공법인은 조합에 비해 평균사업량이 적는데 이는 조공법인이 경제사업 외 예금, 대출 등 신용사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임.

따라서 조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수감주기를 개정안과 같이 4년으로 할지, 임미애의원안 논의 결과에 따라 조합과 동일하게 1년으로 수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합과 조합공동사업법인 비교('24년말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품목축협	조공법인
개소수	916	116	45	23	132
자산규모(평균)	4,576	6,561	4,980	9,942	241
경제사업량(평균)	435	1,229	1,081	3,719	503
신용사업량(평균)	예수금	3,875	5,271	4,230	-
	대출금	2,994	4,295	3,442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916	116	45	23	19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5.3.24)

문 의 처

02)6788-5415

2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대표발의, 2024.12.16.)

참 고 자 료

참고

조공법인 사업량 및 회원수 현황('24년말 기준)

시도	시군	법인명	회원수 (조합 등)	주요사업	사업량 (백만원)
제주	직할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9	원예	424,725
경북	상주	상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14	원예	240,916
경북	김천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9	원예	186,923
전남	나주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16	원예	177,854
경북	성주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9	원예	168,200
전북	남원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126,930
경남	진주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9	원예	120,826
전북	고창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	통합	120,350
강원	평창	평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	원예	118,542
충남	천안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2	원예	118,328
경남	거창	거창한거창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113,111
충남	논산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0	원예	100,669
충남	당진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8	RPC	98,953
경기	연천	한국농협김치조합공동사업법인	9	가공	97,978
경기	안성	안성마춤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1	통합	97,566
경북	경산	경산시조합공동사업법인	7	원예	91,994
충북	음성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90,903
전남	직할	NH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8	축산	83,891
경북	청송	청송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	원예	82,579
경남	밀양	밀양시조합공동사업법인	8	원예	78,303
충남	부여	부여군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75,530
충남	보령	만세보령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7	RPC	73,465
충남	아산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2	원예	71,970
경남	직할	농협한우지에조합공동사업법인	18	축산	70,177
전남	직할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8	축산	69,320
충북	충주	충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9	원예	68,088
경기	여주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8	RPC	67,383
전북	완주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15	원예	65,118
전북	장수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2	원예	61,198
경북	문경	문경시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60,623
경북	영천	영천시조합공동사업법인	8	원예	59,323
충북	청주	청원생명쌀조합공동사업법인	8	RPC	58,706
경기	파주	파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9	RPC	54,189
충남	당진	당진해나루쌀조합공동사업법인	3	RPC	54,111
전북	임실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3	통합	53,792
전남	영광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	RPC	52,080
전남	순천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2	원예	51,601
전북	김제	김제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	12	원예	51,019
강원	평창	강원감자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1	원예	50,386
전북	직할	NH참여우조합공동사업법인	7	축산	50,317
인천	강화	강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3	RPC	50,039
전북	익산	익산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14	원예	49,772
전남	강진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	RPC	48,655

시도	시군	법인명	회원수 (조합 등)	주요사업	사업량 (백만원)
경북	구미	구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7	RPC	47,707
전남	나주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	RPC	47,613
경북	봉화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3	가공	45,105
경북	청도	청도군조합공동사업법인	5	원예	44,775
충남	예산	예산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7	원예	44,241
경북	의성	의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8	원예	44,067
충북	청주	청풍명월조합공동사업법인	6	축산	43,738
경북	예천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3	RPC	43,549
경기	수원	경기도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5	원예	42,712
경기	용인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0	원예	41,437
전북	정읍	정읍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3	RPC	41,429
경남	하동	하동군조합공동사업법인	7	원예	41,110
경북	의성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RPC	40,865
충남	예산	예산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5	RPC	40,753
전북	무주	무주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	원예	40,509
경북	상주	상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RPC	39,735
충남	공주	고맏나루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11	RPC	39,161
경기	이천	이천남부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3	RPC	37,759
전남	영암	영암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	RPC	37,279
전북	부안	부안천년의숨씨조합공동사업법인	7	원예	37,146
전남	보성	보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	RPC	37,078
전북	전주	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4	원예	36,867
경북	영주	영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4	원예	36,811
충북	진천	진천증평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6	RPC	36,526
경남	창녕	창녕군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35,297
충남	서천	서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6	RPC	34,443
전남	담양	담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7	RPC	33,174
전남	영암	영암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9	원예	33,139
충북	청주	청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10	원예	32,429
전남	목포신안	목포신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9	가공	32,090
경기	화성	화성수원안산수리청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	RPC	31,255
경남	직할	김해시조합공동사업법인	9	원예	30,858
강원	횡성	횡성어사품조합공동사업법인	5	통합	30,657
경남	거창	거창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5	RPC	30,115
경남	함안	함안군조합공동사업법인	4	원예	29,942
대구	군위	군위군조합공동사업법인	3	원예	29,252
경북	경주	경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9	RPC	28,302
충남	천안	천안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7	RPC	27,816
강원	춘천	강원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	6	축산	27,606
충남	공주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1	원예	27,353
경남	함양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5	원예	27,080
전북	순창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26,476
전북	진안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3	원예	26,321
경북	경주	경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11	원예	26,215
전남	무안	무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26,144
충남	당진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	13	원예	25,837
경북	안동	안동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8	원예	25,744

시도	시군	법인명	회원수 (조합 등)	주요사업	사업량 (백만원)
전북	김제	서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RPC	25,687
전남	함평	함평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5	RPC	25,422
충남	세종	세종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8	RPC	25,307
경남	창녕	창녕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7	RPC	24,577
전북	김제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RPC	24,521
전북	정읍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24,482
충북	보은	보은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RPC	23,888
경기	용인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4	RPC	21,664
충북	괴산	괴산군조합공동사업법인	4	가공	21,610
전남	함평	함평군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5	원예	20,835
충남	태안	태안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RPC	20,069
경북	고령	고령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4	원예	19,713
경남	남해	남해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7	통합	19,426
경남	하동	하동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6	RPC	19,148
충북	충주	충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6	RPC	17,666
경남	사천	사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7	원예	17,461
충북	제천	제천시하늘드레조합공동사업법인	5	원예	17,231
충남	논산	논산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10	RPC	16,877
경기	양평	양평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4	RPC	15,818
경남	진주	진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11	RPC	15,742
충남	당진	당진TMR조합공동사업법인	2	축산	15,724
광주	직할	광주광역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14	RPC	15,594
경남	김해	김해시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12	RPC	15,190
충북	음성	음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7	RPC	14,908
경남	고성	고성거제통영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11	RPC	14,252
충남	부여	한국머쉬그린조합공동사업법인	3	원예	14,062
전남	장흥	정남진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RPC	12,850
전남	광양	광양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12,438
강원	인제	기린원당농협두부조합공동사업법인	3	가공	11,225
전북	직할	남원섬유질사료조합공동사업법인	2	축산	10,591
전남	장성	장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7	RPC	10,007
경남	창원	창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5	RPC	9,734
강원	고성	고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3	RPC	9,721
충북	단양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	3	원예	9,536
충남	서천	서천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3	원예	6,274
충남	서산	서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7	원예	5,984
전남	구례	구례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3	RPC	5,938
충북	진천	진천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6	원예	0
충북	영동	영동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4	원예	0
경북	포항	포항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7	원예	0
강원	원주	원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6	RPC	0
충남	아산	아산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2	RPC	0